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 금지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3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 금지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5. 12.

다. 회부연월일 : 2026.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격차가 과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2조의12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선택하는 이동통신 요금제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및 제32조의15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u>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u>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u> ----- ----- ----- 1. <u>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생략)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등) ① . ② (생략)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2.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판 -----판 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할 것

현행	개정안
<신설>	2.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신설>	3.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 ----- ----- ----- ----- ----- -----, ----- ----- -----.
1. ~ 4의17. (생략)	1. ~ 4의1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4의19. ~ 17. (생략) ⑥ (생략)	4의19.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등”이라 함)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¹⁾,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할부기간, 추가 청구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기 고지하도록 하며, 계약체결 시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²⁾.

○ 그런데, 2025년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혜택 증진을 위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고액의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가의 요금제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안내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①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이용자가 구매하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위해 저가 요금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2026. 6. 17. IT조선, “단통법 폐지 1년… 여전한 고가 요금제 유도 논란”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63961>)

가입자의 지원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등의 마케팅 관행에 제동을 걸고,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의 통신비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등이 고가 요금제 위주로만 지원금을 안내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요금제 간 지원금 지급 차이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을 상향하기보다 고가 요금제에 지급하던 대규모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이동통신사업자등 간의 지원금 지급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 취지가 이동통신사업자등의 지원금을 확대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정수용

- 고가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법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통신사 간,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고, 규제 운영과정에서의 유통망 혼선 및 미준수에 따른 규제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통하여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는 규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에게 지원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 요금제별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신뢰성을 높이고 법 폐지에 따른 시장효과 체감과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 상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신중검토

- 요금제 간 지원금 금액 차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지원금 운영이 경직되고 전체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유통망에서 다수 요금제와 수시로 변동되는 지원금 조건을 이용자에게 모두 비교 설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유통점 업무 부담과 민원·분쟁 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